

E-2 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받는 비자이다. E-2를 신청하는 분들은 보통 한국에서 E-2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들어오거나 미국 내에서 E-2로 신분을 변경한다.

한국에서 E-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E-2 비자를 받으면 비자가 만기가 될 때까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.

반면 미국에서 E-2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어려울 수 있다. 일단 미국 내에서 E-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로 나가



**이동찬**

이민 변호사

래서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힘들어졌다. 사업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한미대사관에서 E-2 비자를 신

류를 더 까다롭게 볼 수 있다.

방문비자를 받고 입국을 한 후 신분변경을 했다면 처음부터 방문의도가 없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주한미대사관에서 간주하는 것이다.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E-2 비자 신청이 항상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. 사업체가 튼튼하면 신분변경을 했더라도 E-2 비자는 받을 수 있다.

만약 주한미대사관이 E-2 비자를 받는 것이 너무 까다롭다면 다른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E-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.

오래 전에는 E-2 비자를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신청하

## E-2 비자

면 E-2 신분은 없어지는데 다시 입국을 하려면 대사관에 E-2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.

대사관에서 E-2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.

주한미대사관에서는 E-2 비자 심사가 까다롭다. E-2 비자의 조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당한 액수의 투자인데 주한미대사관에서의 상당한 투자액수의 기준이 이민국과 다르다. 법은 동일하지만 해석을 주한미대사관과 이민국이 달리 하는 것이다.

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E-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5만 달러 정도라도 신분변경은 가능하다.

오래 전 국무부의 지침서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와 관련 5만 달러 투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.

그래서 대사관에서 5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상당한 액수의 투자라고 받아드려곤 했다. 그러나 더 이상 5만 달러 투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. 그

청할 때에는 투자금액이 적어도 25만 달러 이상 되는 것이 좋다.

그리고 E-2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 한계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. 한계투자란 E-2 비자 신청자와 그의 가족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이다. 그러므로 사업체는 어느 정도의 수입성이 있어야 하고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.

처음 시작하는 사업체라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미래의 수익성과 고용창출을 보여줄 수 있다.

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회사 세금보고서와 종업원 임금보고서 등으로 수익성과 고용창출을 증명한다. 기존에 있는 사업체가 수익성이 낮거나 사업체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면 E-2 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.

그리고 미국에서 방문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E-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주한미대사관에서 E-2 비자 신청서

는 것이 가능했고 투자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5년동안 유효한 E-2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.

그러나 약 6년 전부터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다른 국적을 가진 E-2 신청자의 서류심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. 현재 멕시코에서는 E-2 신청자가 멕시코에 살지 않는 경우 E-2 비자를 연장하는 서류만 심사하고 있다.

그러나 아직까지도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E-2 서류심사를 받아주는 대사관이 남미에 있다. 그 곳에서는 투자금액이 적더라도 5년 동안 유효한 E-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.

그리고 미국 내에서 방문비자에서 E-2로 신분변경을 하신 분들 또한 E-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. 일단 E-2 비자를 받게 되면 자유롭게 한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.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란다.

(213)291-9980